

자율적 정치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의 조건 롤즈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홍성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的政治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민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키워드: 숙의 민주주의, 롤즈, 하버마스, 공론영역

1. 서론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30년이 넘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이끄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다. 제도적 차원의 민주화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이 채 못

* netandnet@hanmail.net

된 현 시점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정신으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임혁백, 1997),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대와 내포적 심화의 불일치’(강정인, 1998) 등,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은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제도권 정치가 권력형 비리의 만성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연고주의의 만연 등으로 인한 대의정치의 기능 부재에 허덕이고 있을 때, 삶의 정치¹⁾는 생태계 파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양심적 집총 거부, 한총련의 합법화 등 새로운 정치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공적인 정치적 영역과 시민사회간의 이러한 단절은 급기야 의회의 인적·제도적 차원의 결합을 시정하라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이어졌다.²⁾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은 정부의 민주적 구성과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익의 균형에 핵심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시민 불복종운동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감안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헬드(Held)가 일찍이 제기한 바 있듯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간의 상호의존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Held, 1987/1988, 316쪽).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대정신 수립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숙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이론체계이다. 1990년대 초 등장한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이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Dryzek, 2000).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정당화 논리, 실천적 지침은 롤즈

1) 삶의 정치는 정당이나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정치와 시민社会의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소위 성찰적 근대화 논자들은 생태계 위기와 같이 원인과 해결방법에 있어 전통적인 정치적 영역과는 상이한 정치적 영역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성찰적 근대화 논자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Beck, 1993/1998)을 참조할 것.

2) 여기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경험적 사례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가리킨다.

(J. Rawls)와 하버마스(Habermas)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Dryzek, 2000; Elster, 1998; Mouffe, 1999).³⁾ 숙의 민주주의는 이론체계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와 비판이론,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독일이라는 양대 전통의 조우라는 점에서 기억될만하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좌파적 자유주의자로 명명되는 롤즈와 자유주의자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하버마스의 조우는 숙의 민주주의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야심에 찬 기획임을 드러낸다.

숙의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단계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성과물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사회를 시민들이 사회운영에 관한 기본원리의 저자가 되는 사회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법치적 질서와 자율적 정치참여간의 조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의존적 변혁 방안을 모색한다.

롤즈와 하버마스는 숙의 민주주의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좁히기 어려운 차이점 또한 갖고 있다. 롤즈가 토론과 대화 상황의 공정성과 합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 하버마스는 토론과 대화, 여론의 생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롤즈는 민주주의의 질서 정연함과 안정성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역동적 자기 수정의 가능성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현재 언론학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이론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숙의 민주주의는 해석상의 오해를 낳기도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시각과 토론 및 대화의 유용성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는 해석이다. 숙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는 참여 민주주의로 한 형태로 이해할 경우, 공론영역은 정치적 합의를 산출하는 의사결정 기제로

3) 1993년 발간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과 1992년 발간된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Faktizität und Geltung)은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을 낳은 핵심 저작들이다.

상정된다.⁴⁾ 이 경우, 시민들에게 과도한 정치적 의무가 부가되어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는 자율적 정치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적 질서의 제도화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대화나 토론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이론적 틀로는 적합하지 않다.⁵⁾

숙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법치적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구별되며,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의 집합적 결정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자유 민주주의와도 차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학적 관심을 어떻게 대두시킬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숙의 민주주의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이다. 연구자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롤즈와 하버마스 양자의 이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인식’, ‘숙의 민주주의의 절차성’, ‘숙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숙의 민주주의의 여전과 언론’ 등의 범주를 설정했다.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해 연구자는 첫째, 롤즈와 하버마스로 대별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공통된 이론적 주장과 논쟁점은 무엇인지 추출하고, 둘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숙의 민주주의 기획과 언론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4) 숙의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과 동일시하는 것(박선희, 2000, 71쪽)은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은 시민들이 법률체정에 관한 민회 참석뿐만 아니라 공직 참여를 의무로 규정했으며, 규모 면에서 4·5만명 미만의 매우 작고 동질적인 성원들로 구성된 도시국가를 대상으로 했다(Dahl, 1989/1999. 참조).

5) 대화나 토론의 유용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은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나타난다(김유경, 2001). 경험적 연구가 숙의 민주주의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극복 가능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규범 이론의 성격이 강하다.

2.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인식

숙의 민주주의는 물론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 담고 있는 현실인식의 공통분모는 다원주의이다. 현대의 다원주의는 다양성과 차이의 승인이라는 규범적 요소와 결합한다. 민주시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원성은 매우 복합적인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날로 새로운 갈등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갈등 가능성은 지닌 다양성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현실과 규범의 조화를 모색하게 된다.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리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간에 안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각하게 상반되지 만 그러나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모두가 입 헌적 정체의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중첩적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치관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Rawls, 1993/1998, p. xxxii)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 입각하여 현대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 충분조건으로 제시한다. 첫째, 사회의 기본구조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규제된다. 둘째, 이 정의관은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간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초점이 된다. 셋째,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기본적 정의의 질문들이 쟁점이 될 때, 공적 토론은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진행된다(Rawls, 1993/1998, 55쪽).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민주사회의 정치문화가 상반되며 화해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원주의가 합당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제도 내에서 인간이성의 능력이 작용

하여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이다(Rawls, 1993/1998, 59쪽). 그러므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에 의한 사회적 분열이 재앙이나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포괄적인 교리들은 민주체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에는 이러한 포괄적 교리들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룰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계급적 위치 또는 직업, 민족, 성, 인종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판단의 부담에서 오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본다.⁶⁾ 이러한 세 가지 갈등 가능성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포괄적 교리들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소이다. 룰즈는 만약 포괄적 교리들간의 중첩적 합의가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이루어지면, 두 번째 갈등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심각한 갈등으로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의 부담에서 오는 갈등은 항상 존재하며 가능한 합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Rawls, 1999/2000, 278쪽).

룰즈가 포괄적 교리에 입각한 신념들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만약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를 정치적인 것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시민들은 도저히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룰즈는 정치적 합의의 대상을 공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들을 배제하고 단지 사회가 협동의 체계라는 것만 생각하고 시민들이 서로 협력을 위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이 숙의 민주주의에서 합의의

6) 판단의 부담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룰즈는 ① 특정 경우와 관련된 증거는 서로 상충하고, 복잡하며 평가하기 힘들며, ②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고려점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동의하는 곳에서도 그 비중이 불일치하고, ③ 도덕적, 정치적인 개념을 비롯해 모든 개념들이 모호하며, ④ 도덕적·정치적 가치를 형량하는 방식은 삶의 총체적 경험과 인생경로를 통해 형성되는데, 총체적 경험은 서로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Rawls, 1993/1998, 70~71쪽).

대상인 것이다(김만권, 2001, 216쪽).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이 합의 가능한 정치적 정의관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에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정의관은 민주사회의 공적 정치문화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개념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한다(Rawls, 1993/1998, 276~277쪽). 이러한 요건들에 입각하여 룰즈가 제시하는 정치적 정의관은 다음과 같다.

- a. 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입각한 완전한 적정구조에 대한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구조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 그리고 다만 그러한 자유들이 그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 b.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들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하며, 둘째, 이를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awls, 1993/1998, 6쪽).

정치적 정의관은 첫째,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 둘째, 다른 권리나 가치들에 대한 그러한 기본권들의 우선성 확립, 셋째, 그러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자원의 보장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정태욱, 2002, 56쪽).

정의의 두 원칙들 사이의 우선성은 그 순서대로 부여된다. 정의의 제1원칙 중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 인격적 통합성과 자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자유들, 법치에 의하여 포함되는 권리와 자유들이 속하게 된다(Rawls, 1993/1998, 360쪽). 제1원칙에 포함되는 기본적 자유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해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은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제2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롤즈가 민주주의의 현실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삼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시민들 간의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사회협력의 기반이 되는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공적 토론을 가로막는 작용을 한다. 롤즈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정의관을 수립하고, 정치적 정의관이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롤즈가 사회계약이론의 전통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운영원리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준거를 수립하고자 했다면,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영역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현상으로 설명한다. 생활세계는 행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규범적으로 통합되고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며, 체계는 목적합리성에 의해 주도되고 돈과 권력을 매개로 제도화된 영역이다.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과정은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체계가 생활세계를 압도하는 과정이다.

정치적 범위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국가관료제의 비대화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고도화에 따라 공론영역의 비판적 잠재력이 약화되고 소멸됨을 의미한다(김호기, 1995, 130-131쪽).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적 의지형성, 입법, 재판과 같은 법치 국가적 의사소통의 형식들이 체계의 명령에 의해 압박 받기 때문에 발생한다(Habermas, 1992/2000, 30쪽). 그러므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과정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가 자본주의적인 경제체계와 관료제적인 행정체계의 ‘지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체계의 식민화로 인해 상실된 의사소통적 이성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연대력을 회복시켜, 화폐와 행정권력 등에 대항해 생활세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권력들간에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Habermas, 1990/2001, 41쪽).⁷⁾

사회통합의 연대력은 생활세계는 물론, 국가 및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에서도 작용해야 한다. 즉, 숙의 민주주의가 목적으로 하는 변혁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재형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社会의 재편성에 관련되어 있다.

롤즈와 하버마스가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점은 이성에 대한 신뢰이다. 그들이 보기의 현대사회의 위기 상황은 근대적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의 내용이 현실적 역사 발전과정에서 왜곡되고 그 원리들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현대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원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토대를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숙의 민주주의의 절차성

롤즈와 하버마스의 이론체계 내부에 공통된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는 가장 현저한 요소는 절차성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⁸⁾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수립하고자 했으며,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

7)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의 매체로 화폐, 행정권력, 의사소통적 이성을 상정한다. 화폐와 행정권력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행위의 영역으로서 체계에 의해 작동되는 매체이다. 반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생활세계에 고유한 사회통합 방식이다.

8) 원초적 입장은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 있어서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한다.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가 아니라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Rawls, 1971/1985, 33쪽). 사회계약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질서인 국가와 법 등을 정당화하는 논변의 한 방식이며, 가상적인 형태의 사회계약은 공적 권리의 합법성과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비판적 판단의 기준이다.

에 기반한 담론적 절차를 가정한다. 규범이론에서 절차성에 대한 의존은 한 편으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현대의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할 때 선협적 의식이나 보편 타당한 세계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정치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규제하는 정치 규범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벗어난 어떠한 외재적인 정치 규범적 요소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성격은 공동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ructivism*)라는 독특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구축한다. 정치적 구성주의는 ‘만약 반성적 평형상태’⁹⁾라는 것이 있어 획득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이 특정의 구성절차의 산물로서 재현됨을 의미한다(Rawls, 1993/1998, 111쪽).

롤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이고 순수 정치적인 관점만이 정의로운 입헌주의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이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공유할 때, 이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공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정치적 문제를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정치적 구성주의의 출발점은 원초적 입장을 통해 구체화된다. 원초적 입장에 대한 기본 발상은 원초적 입장의 인간관과 이에 동반하는 사회 협력관을 공정으로서 정의의 원칙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대표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원초적 입장의 제한을 받아들이는데, 원초적 입장의 제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다.

9) 반성적 평형상태는 공정으로서 정의나 여타의 정치관이 모든 일반성의 수준에서 적절한 평가를 거쳐 설득력 있는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진 후, 전체적으로 그 견해가 우리가 더욱 확실히 견지하는 정치적 정의에 대한 숙고된 신념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했느냐에 의해 판가름 난다(Rawls, 1993/1998, 35쪽).

무지의 장막이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데 있어 평등을 저해하는 우연성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인지상의 조건이다.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는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있어서의 지위나 계층은 물론 재능이나 체력적 배경, 선관, 심리적 경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 개인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사정은 사회가 그 내용이야 어떠하건 간에 정의의 여전 속에서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적 현상이나 경제이론, 사회 조직의 기초와 심리적 법칙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Rawls, 1971/1985, 156쪽; Rawls, 1993/1998, 374쪽 참조).

원초적 입장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전체로 할 때, 중첩적 합의(an overlapping consensus)를 가능하게 한다. 롤즈는 포괄적 교리들을 수용하는 시민들이 중첩적 합의에 예속되었을 때, 질서정연한 민주적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실주의와 안정성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첩적 합의는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입헌적 민주주의에서 공적 정의관은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부터 가능한 독립해야 한다. 이 때 정치관 그 자체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첩적 합의는 합의의 목적 자체가 도덕적 관점에 대한 것이며, 도덕적 근거에 의해 수용되기 때문에 중첩적 합의는 국가간의 조약과 같은 잠정적 타협이나 개인의 집단적 합의나 정치적 홍정의 결과와는 구분된다(Rawls, 1993/1998, 179~186쪽).

롤즈와 하버마스가 숙의 민주주의의 관점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절차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치하기 어려운 차이점 또한 갖고 있다. 하버마스는 롤즈가 정보제한을 통해 원초적 상태의 정당들을 하나의 공통된 관점에 고정시키고, 해석관점의 다양성을 기교로서 중립화한다고 비판한다. 원초적 상태는 시민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그 이후의 헌법제정, 입법, 법 적용 등 후속단계에 밀려드는 정보는 정보박탈 하에서 이미 합의된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Habermas, 1996/2000, 86쪽).

하버마스는 자신의 담론 윤리학은 도덕적 관점이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논증의 절차 속에 구현되어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초적 상태보다 훨씬 더 일관적인 절차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실천이성과 구별되는 의사소통적 이성의 개념을 대두시킨다. 하버마스는 고도로 분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나 개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용되기 어려우며, 선협적 주체의 실천이성을 규범의 진원지로 삼기도 어렵다고 본다. 대신 그는 대화나 토론의 논증적 절차에 내재한 절차적 합리성을 '규범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제시한다. 전통적 관습이나 규약이 통용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에서 모든 규범과 그것이 지닌 정당한 구속력은 오직 상호 이해의 바탕으로 전개되는 의사소통의 절차 속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천이성과 구분된다. 첫째, 의사소통적 이성은 개인이라든가,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 주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적 이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적 상호작용의 망을 매개로 하고 삶의 형식을 구조화하는 언어적 매체이다. 둘째, 의사소통적 이성은 실천이성과는 달리 행동규범의 원천이 아니다. 실천이성이 항상 행동규칙을 강제하는 명령이라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반 사실적인 유형의 화용론적 전제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약한 선협적 강제성을 가진다. 셋째, 의사소통적 이성은 타당성 주장으로서의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내용의 방향을 스스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Habermas, 1996/2000, 28쪽).

의사소통적 이성은 기능적으로 세분화되고 이질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적, 집단적 갈등을 정당하게 조종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적인 절차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모든 법적, 윤리적 규범들이 의사소통적 이성에 근거한 민주적인 담론적 절차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으며, 생활세계 속에서 관철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소통적 이성은 정당한 구속력을 지닌 보편적 규범의 원천이다.

하버마스는 우선 일상적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사회적 현안을 공적인 논쟁 사안으로 부각시키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공론영역을 자신의 정치이론에 재 도입한다.

공론영역과 의회 내의 민주주의적 의사 형성의 제도적 절차를 거쳐, ‘공적인 견해’가 정당성을 인준 받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을 통해 절차적 합리성으로 서의 의사소통적 이성이 현실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더 나은 인간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실천적 원동력의 원천임을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룰즈와 하버마스가 숙의 민주주의에서 일관되게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이다. 룰즈와 하버마스의 이러한 시각은 절차성의 출발점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하버마스와 룰즈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각자의 선호를 의문시하고 초월할 수 있으며, 각자의 신념이나 선호의 제약을 요구하는 정당한 의사소통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성찰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의 인지적 제약 조건에서 출발하는 룰즈보다 일상적인 언어사용에 내재한 의사소통적 이성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하버마스가 이론적 보편성에 보다 다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4. 숙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민주주의와 여타 정체를 구분하는 가장 현저한 기준은 궁극적인 최고의 지배권으로서 주권이 사회 전체에 부여되어 있으며, 주권행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시민은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정치인과 유권자의 기능적 분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주권 개념을 의사소통적 질서로 새롭게 해석하여 주권의 자기 입법의 개념에 다가서고자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룰즈는 공적이성을, 하버마스는 공론

영역을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대두시킨다.¹⁰⁾

롤즈는 공적이성이 민주주의와 여타의 정체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임을 주장한다. 공적 이성은 시민에 대한 입헌민주정부의 관계와 시민들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적 이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공적’이다. 첫째, 공적이성은 시민의 이성 그 자체로서의 공중의 이성이다. 둘째, 공적이성은 그 주제가 공중의 선(the good of the public)과 근본적 정의의 문제들이다. 셋째, 공적이성은 그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해 주어지고, 이것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공적이다 (Rawls, 1993/1998, 263쪽). 공적 이성은 시민들이 공적이성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함에 있어 서로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권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Rawls, 1993/1998, 264쪽).

공적 이성의 개념에 대해 롤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공적 이성은 헌법의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국한된다. 둘째는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정부 관료들과 공직 후보자이다. 셋째, 일련의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주어진 공적 이성의 내용이다. 다섯째, 시민들의 정의관들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이 상호성의 기준을 충족 시켜주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이다(Rawls, 1999/2000, 201쪽).

롤즈는 공적 이성은 모든 정치적 토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치 공개토론(public political forum)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적 정치 공개토론은 대법원 판사들의 논변, 정부 관료들 특히 수석행정가와 입법가들의 논변, 공직 후보자들과 그들의 캠페인 매니저의 논변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이들의 공적 연설이나 정당강령, 정치적 발언 등에 대한

10) 롤즈의 공적이성과 하버마스의 공론영역에 적용되는 합리성의 개념은 칸트가 계몽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성을 갖는다(Bohman & Rehg, 1997, x).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진우(1993, 283쪽 이하)를 참조할 것.

논변을 말한다(Rawls, 1999/2000, 211쪽).

공적 정치 공개토론은 배경문화(background culture)와 분리되어 있으며, 공적 정치 공개토론과 배경문화를 매개하는 것은 비 공적 정치문화(nonpublic political culture)인 각종 대중매체들이다. 배경문화에는 민주사회의 고유한 각종 포괄적 교리들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협회들의 문화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교회와 대학, 지식과 과학적 탐구의 사회, 클럽 등이 배경문화에 속한다(Rawls, 1993/1998, 16쪽). 민주주의에서 배경문화는 정치적 이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느 하나의 중심적인 개념이나 원칙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룰즈는 이를 배경문화가 사회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Rawls, 1993/1998, 272쪽).

그렇다면 다양한 배경 문화 속의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이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룰즈는 여기서 공적 이성의 개념과 구별되는 공적 이성의 이상을 제시한다. 공적 이성의 이상은 공직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판사, 입법가, 행정 수반, 그 외의 정부 관료들이 공적 이성의 개념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준수할 때 실현된다. 그리고 이를 공직 담당자 및 공직 후보자들이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자신들의 논거를 자신들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실현된다(Rawls, 1999/2000, 213쪽).

공적 이성의 이상은 시민들 각자 정치적 정의관으로 간주하는 기본 틀 내에서 자신들의 근본적 토론을 지도해야 한다. 시민 각자는 다른 동료들이 자신들과 함께 합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Rawls, 1993/1998, 280~281쪽). 그러나 ‘시민성의 의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시민성의 의무를 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자유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공적 이성’의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는 논쟁점은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의 구분에서 오는 문제이다. 그것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시민사회를 통해 제기되는 정치적 문제들을 수용하는데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과 둘째, 가족 내에서의 정의 문제를 정치적인 주제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사회 내부에 남녀 차별을 영속화시킨다는 점 등이다.

롤즈는『만민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롤즈는 배경문화에 속하지만 공동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적 주장들이 공개적인 정치적 토론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자유주의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결코 포괄적인 교리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적 이성을 하나의 정치적 정의 관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인 견해가 정치적 관점에서 표현될 때 그것은 공개적 정치 토론의 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견해들은 포괄적 교리에 입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Rawls, 1999/2000, 223~224쪽).

남녀차별의 영속화 문제에 대해 롤즈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 상정함으로써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가족에 대한 제약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롤즈는 공적이성이 배경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협회의 내부 생활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지만, 정치적 원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평등한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awls, 1999/2000, 251~252쪽).

롤즈가 공적이성이 자유주의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신이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안정성 확보라는 지점에서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 가능성이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한 공론영역은 민주주의적인 제도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도 숙의 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규제되는 결정을 지향하는 토의와 공론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의견형성 과정 사이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롤즈를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아렌트(H. Arendt)의 의사소통적 권력의 개념을 차용하여 국

민주권의 원리를 새롭게 해석한다. 아렌트는 폭력과 권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권력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제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기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적 권력은 왜곡되지 않는 공론영역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Habermas, 1992/2000, 191쪽).¹¹⁾

권력과 폭력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권력은 법의 편에 서게 된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정당한 법을 산출하는 체계이다. 하버마스에게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권력은 시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나오며,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시민들의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 부여한 법률에 의해 행사될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원적 의사소통 질서를 통해 설명한다. 그것은 첫째,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규제되는 결정을 지향하는 토의와 공론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의견형성 과정이며, 둘째, 제도화된 숙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적 전제의 제도화로 규정된다(Habermas, 1992/2000, 362쪽). 후자는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체의 공론영역으로서 정당화의 맥락을, 전자는 공중이 담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론영역으로서 발견의 맥락을 구성한다(Habermas, 1992/2000, 372쪽).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상호이해에 입각한 의사소통은 의회와 그 삼의 기구들의 내부와 외부에서 토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 토의의 장 속에서 사회 전체와 관련되고 규제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관해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의견은 제도화된 선거나 입법부의 결정을 통해 행정권력으로 변형된다(Habermas, 1992/2000, 364쪽).

하버마스가 단일의 정치적 공론영역이 아닌 이원적 의사소통적 질서를 상정하는 것은 현실의 정치행위가 합의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은 정치체의 공론영역

11) 아렌트의 의사소통적 권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렌트(Arendt, 1970)을 참조할 것.

은 법적으로 규제된 절차에 따라 의사형성 및 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처럼 권력이나 화폐와 같은 사적인 힘들이 공정한 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원적 의사소통적 질서를 통해 구축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중심성은 ‘결정과 분리된 의견형성’에 놓여있다. 그것은 규범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조직이 공론영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 견해, 여론, 정보들을 봉쇄할 경우 규범적 토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공론영역은 이처럼 국가의 행정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권력이 발생하는 장소인 것이다(이진우, 1996, 202쪽).

공론영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의해 재생산되는 생활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의 핵심은 공적영역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유로운 사적영역의 친밀성에 있다. 친밀성은 친척, 친구, 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의 생활사를 서로 연결하며, 공론영역의 담지자인 공중을 충원해주는 역할을 한다(Habermas, 1992/2000, 427쪽).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으로서 공론영역은 행동, 행위자, 집단과 같이 기본적인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론영역은 권한이나 역할의 분화 및 성원자격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조직과 다르며, 공론영역 내부에 경계는 있지만 외부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체계와도 다르다.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을 기술하는 최선의 길은 ‘의견의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Habermas, 1992/2000, 433~434쪽).

공론영역 속에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견해들은 걸러지고 종합되어 여론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의사소통적 이성의 개념에서도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론영역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기능이나 내용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행위를 가능케 하고, 의사소통행위 속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공론영역은 모든 잠재적인 참여자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숙의 민주주의의 이원적 의사소통적 질서에 의거할 때, 결정의 부담은 면제된다. 공론영역에서의 발언은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분류되고, 정보와 근거들을 토대로 의견을 형성한다. 따라서 공적의견의 형성에 있어 핵심은 합의여부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규칙이 권력의 개입 없이 충실히 지켜느냐 여부이다. 공론영역을 통해 형성된 시민의 의견 즉, 여론은 시민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회, 사법부의 의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다. 결국 공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권자, 의원, 공직자 등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만 정치적 권력으로 변형될 수 있다.

룰즈의 공적이성과 하버마스의 공론영역에서 산출되는 의사소통적 권력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형성 및 사용은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와 왜곡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 숙의 민주주의의 여건과 언론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학적 관심을 어떻게 대두시킬 것인가? 이는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기에서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에서 언론을 어떻게 규정하고, 현실의 언론현상에 대해 어떠한 실천적 지침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기능적 분리에 입각한 자유 민주주의 의사결정 모델은 대중매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송신자와 수신자의 기능적 분리는 정치적 선호에 있어 정치인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대중매체 또한 수신자를 대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은 정치적 언론이 시민적 자유로 각인 되고, 정치

적 언론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롤즈의 숙의 민주주의가 언론현상에 갖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이 안고 있는 난매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언론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보다 사회의 기본 구조상에서의 불평등과 소외의 해소를 통해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둘째는 언론자유의 정당화 방식이다. 롤즈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¹²⁾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롤즈는 기본적 재화의 목록을 통해 제시한다. 기본적 재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체적 선관을 추구하고,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여건과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재화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 재화는 첫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 둘째,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셋째, 직위의 힘과 특권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 넷째, 수입과 부, 다섯째,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 등이다(Rawls, 1993/1998, 378쪽).

숙의 민주주의에서 자율적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연대감이 훼손되어 입헌정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훼손되어 시민들이 정치적 숙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

12) 자유주의에 있어 언론자유의 정당화 논리는 민주주의 이론체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적·사회적 삶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소통적 수단에 제한 없이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정치적 이상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대중매체의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Keane, 1991).

첫째,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공적 이성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과 훈련과정에 대한 기회의 평등, 둘째, 기본적 자유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득과 부의 적정한 분배, 셋째,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실업구제의 최종 대안으로서 정부, 넷째, 기본적 건강보호제 도의 전 시민적 보장, 다섯째, 선거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및 공적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보장 등이다(Rawls, 1999/2000, 85-86쪽).

롤즈의 이론에서 언론현상에 대한 성찰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정치적 언론자유에 대한 엄격한 보장에 대한 논변이다. 롤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시민들이 정의감 행사를 통해 사회의 기본구조에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지적한다. 이 기본적 자유는 일정한 형태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요구하며 정치적 연설의 자유,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한다. 이들 자유는 시민들의 숙고적 이성을 통해 자신들의 선관을 형성하고,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Rawls, 1993/1998, 410쪽).

언론자유의 정당화 측면에서 롤즈가 제기하고 있는 바는 정치적 언론의 자유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이 숙의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롤즈의 시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에 대한 재해석이다. 롤즈는 언론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예외를 규정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¹³⁾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롤즈는 만약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에 따른 언론자유 제한이 혁명이나 전복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는 정치적 자유라는 근본적 자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제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적 언론자유를 제한하기 위

1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은 폭력사용의 주장이나 범법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즉발적인 불법적 행위를 선동 또는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행동을 선동 또는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만 하는 헌법적 위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법칙 속에는 정치적·경제적·도덕적 위기나 국가 파멸의 위협과 헌법적 위기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거에 의거하여 롤즈는 정치적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입법가가 예방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악은 사상의 자유상실, 기본적 자유의 상실, 공정한 정치적 자유의 가치 상실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방법 이외에 악을 예방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야 한다(Rawls, 1993/1998, 420~435쪽).

롤즈의 이러한 견해는 코헨(Cohen)에게 이어져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코헨은 현재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표현들이 정치적 언론자유의 중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헨은 표현행위를 보다 세밀하게 범주화하여 제한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적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을 구분하여,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훨씬 덜 해악적이므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Cohen, 1993).

롤즈가 숙의 민주주의 이론을 수립하는데 있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이나 상업화 등 언론학에서 중시하는 학문적 의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롤즈는 사회의 기본구조와 헌정질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론학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풍부한 합의를 가질 수 있다. 이미 앞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숙의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롤즈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의미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해석하고, 갈등가능성을 담고 있는 각종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는 공론영역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다는 점에서 언론학에 대해 매우 풍부한 적용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버마스가 비판이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비판이론 전통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여론을 통해 국민주권의 원리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숙의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와 의지를 증폭시키는 대중매체의 역할을 배제하고는 이론체계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하버마스는 복지국가적인 미디어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 여러 계기를 통해 대중매체가 점차적으로 보다 중립적인 견지에서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의 진정한 담지자로서 시민사회를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치주체로 상정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비 국가적이고 비 경제적인 의사소통적 네트워크 혹은 자발적 결사체로 규정된다.¹⁴⁾ 시민사회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통해 형성되는 운동공간의 성격을 띠며, 공적 의견형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반 이익과 관련된 주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거나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 및 쟁점의 옹호와 관련된다. 이때 대중매체들은 경합하는 의견들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형태로 시민사회의 공적 의사소통의 매체적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저널리즘에 민감한 정치체계는 정당활동과 투표행위 등을 통해 공론영역과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의 불가침성에 의거하여 삶의 형식, 하위문화, 종교적으로 성숙한 다원주의에 의해 뒷받침 받을 때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Habermas, 1992/2000, 442쪽).

공론영역의 의사소통적 구조는 활기찬 시민사회에 의해 유지될 수 있으

14) 하버마스는 시민사회를 욕구의 체계, 즉 사회적 노동과 상품거래의 시장 경제체계로 규정짓는 헤겔적 전통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나 맑시즘적 입장에서 사법적으로 구성되고 노동시장과 자본시장과 상품경제에 의해 조정되는 시민사회의 개념과는 상이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Habermas, 1992/2000, 440쪽).

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격을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적 자기관련성’이라고 규정한다. 즉, 공론영역에 참가하는 시민은 정치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론영역을 확장시키며, 자신의 정체성과 행동능력을 보장하는 정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론영역과 시민사회를 통해 확보되는 정치적 운동형식과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직접적으로 자기자신 만을 변형시킬 수 있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정치체계의 자기 변혁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다. 공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절차를 거칠 때만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되고, 정당한 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Habermas, 1992/2000. 446쪽).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실제 삶의 세계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있지만, 정치체계 안에서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공론영역은 이제 더 이상 단일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의사소통적 네트워크가 복잡해져가고 있다. 공론영역 내부의 분화 현상 및 내적 긴장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시민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공적 사안을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공유하게 하고, 여론으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반면, 대중매체에 투하된 자본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채널을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복잡성의 증가와 의사소통채널의 집중화라는 불균형으로 인해 대중매체는 선택적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선택적 과정은 대중매체에 있어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대중매체에 내재되어 있는 의사소통적 해방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공론영역은 대중매체 독점체들과 사회적 권리집단에 의한 의식적 조작과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장악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시청자들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이며, 둘째, 법치국가의 원리 속에 대중매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와 규제 이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Habermas,

1992/2000, 452~454쪽).

대중매체의 권력적 중립화에서 하버마스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시민사회 의 주변부에서 출발하여 대중매체를 거쳐 정치체계의 중심부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의사소통의 흐름이다. 핵무기 경쟁, 생태계 위험, 제3세계 빈곤의 악화와 세계경제 질서의 문제, 민족적·문화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이민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경험들은 대중매체에 내재해있는 해방의 잠재력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공론영역에서의 공중의 지위를 상승시킨다 (Habermas, 1992/2000, 457쪽).

정치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다.¹⁵⁾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규칙 위반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은 그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못한 공적 결정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하버마스는 시민불복종운동이 시민사회의 본질적인 자기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시민불복종이 언제나 제도화된 정치적 의지형성을 공론영역의 의사소통 과정에 다시 연결시키라는 암묵적인 요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의 본질적인 의미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는 헌법을 종결되지 않은 기획으로 상정하는데 있다. 즉, 법치국가는 완성된 구조물이 아니라 권리체계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실현해야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오류 가능성과 수정 가능성을 지닌 기획이다(Habermas, 1992/2000, 459~460쪽).

숙의 민주주의는 공론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중대를 의미한다. 보만(Bohman, 2000)은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고유한 생산자와 소비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만은 대중매체에 의해 매개되는 정치적 의사소통이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는 노동 분업에 기초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15) 롤즈가 제시한 시민불복종에 관해서는 (Rawls, 1971/1985)를 참조할 것.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보만은 숙의 민주주의에 입각할 때 이 같은 노동분업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정치 문화를 포함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 같은 분리가 놓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성찰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로서 언론인과 수용자의 역할 구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최근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시민미디어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권력화를 내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숙의 민주주의의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주목할 점은 르즈가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의 왜곡을 놓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소극적 대처는 숙의 민주주의 기획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가 과연 어떠한 사회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대중매체의 중립화에 있어서도 하버마스가 시민사회와 정치적 활성화에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중매체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없다면,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밖에 없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황태연, 1996, 161쪽).

그러나 하버마스가 이러한 견해를 수긍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시민사회가 국가, 생활세계의 운영원리가 체계의 운영원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에 대한 소유권의 전면적 개혁이 숙의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행정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보다 가속화될 수도 있다.

6. 결론: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가능성

숙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롤즈와 하버마스가 중심 축을 형성하고, 공동체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론자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비는 숙의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의 하나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보편주의적 가정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설명력 및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¹⁶⁾

왈찌는 롤즈의 이론적 시도에 대해 토의에 의한 합의나 합리적 결정이 영구히 갈등적인 실생활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는 의견불일치와 갈등으로 끊임없이 복귀하며, 이것들을 처리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일시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무관하게 숙의 민주주의는 혼존하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신중히 고안되었다고 비난한다(Walzer, 1999/1999, 88쪽).¹⁷⁾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왈찌의 비판은 정치이론의 구축방법에 있어 맥락의 문화적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왈찌의 롤즈 비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다원주의의 사실을 사회학적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의의 기준이 보편적 우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원적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정순, 2001, 139쪽).

왈찌의 문제 제기는 무페가 롤즈를 대상으로 삼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

16) 『사회정의이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의 비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맥킨타이어(A. MacIntyre)와 샌델(M. Sandel)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을 듣는다. 반면, 왈찌(M. Walzer)를 위시한 다원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과의 논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박정순, 2001, 139쪽).

17) 그렇지만 왈찌가 하버마스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왈찌(Walzer, 1998/1999)는 롤즈, 하버마스, 액커먼(B. Ackerman) 등을 한데 묶어 특수주의적 주장을 배제한 보편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에 대한 논쟁을 연상시킨다. 무페는 ‘정치적인(the political)’과 ‘정치(politics)’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무페는 고정되고 객관적인 경계를 갖는 실체로서 이해되는 정치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개방되어 있으며 불확정적인 그 무엇을 지칭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로 대체되어 가는 시평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주장한다(윤평중, 1998, 328쪽). 이러한 시각에서 무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치를 결여한 정치철학’이라고 비판한다. 무페는 룰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논하면서도 도덕적 담론 특유의 추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덕적 제약 아래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을 정치적인 과정에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Mouffe, 1999). 무페의 주장은 한마디로 룰즈가 정치적인 것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 갈등, 적대, 권력관계, 종속과 억압의 형태가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대해서도 무페는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무페는 민주적 사회를 완전한 조화나 또는 투명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페는 헤게모니 개념을 원용하여 사회적 객관성은 권력의 작용에 의해 구성되며, 사회적 객관성은 그것의 구성을 통치하는 배제의 자취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실천은 이미 주어진 정체성의 권리의 보호에 있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며 언제나 취약한 지형 속에서 구성된다(Mouffe, 1999).

무페는 오직 상이성을 존재 가능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 안에서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치가 올바로 구성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본질주의에 입각한 모든 형태의 다원주의는 반드시 다원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끝내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무페의 기본입장이다(김동수, 1995, 138쪽). 무페의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성에 의거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이 제기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가 불확실하고 비 고정적인 실체를 구성한다는 무페의 기본 논리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규범적 진공상태로 볼고 잘 소지가 매우 크다. 월찌와 무페의 주장을 통해서 볼 때, 현재의 숙의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실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것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히 보편화된 이론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별국가 혹은 개별적인 정치공동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시론적으로 나마 특수한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숙의 민주주의가 갖는 의의를 기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해석에 있어 롤즈와 하버마스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사회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롤즈는 공적이성과 배경문화 혹은 공적영역과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사회관에 기초하여, 주로 공적영역에서의 근본적 갈등해결에 주력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공론영역이라는 삼분할적인 사회관을 기초로 공론영역을 통해 결집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매개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회관의 차이에서 롤즈와 하버마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문제와 국민들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그들이 각각 숙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의 차이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숙의 민주주의를 해석하는데 있어 롤즈는 건국기, 재건기, 뉴딜시대를 미국의 현정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기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헌법을 수립하고, 노예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家를 수립하는데 있어 공적이성은 정치적인 가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국민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Rawls, 1993/1998, 290쪽). 롤즈가 강조하듯이 숙의 민주주의는 헌법적 필수 사항들 및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결정적 난국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반면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을 왜곡된 근대화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양식으로서 신사회운동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치적 이슈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는 ‘작은 정치의 영역’, ‘생활정치의 영역’에 적합성을

갖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

롤즈의 숙의 민주주의는 공적이성을 통해 포괄적 교리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 숙의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롤즈가 언명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적인 집총 거부와 같은 예를 제외하면 포괄적 교리들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현실의 정치에서 가장 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할 것인가,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공기업을 민영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은 포괄적 교리들간의 중첩적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나 연고주의 등에 의해 시민들의 투표행위가 크게 영향받고 있는 현실은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숙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비환, 1999. 참조).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롤즈의 숙의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정치적인 숙의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 가보안법 개정이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사상법에 대한 준법 서약, 보호관찰 처분 등이 현존하는 현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언론의 자유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게 한다(조국, 2001. 참조).

롤즈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정의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문화 속에서 수정 가능한 형태를 띤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합의 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의 도출은 롤즈의 이론이 아닌 한국사회에 맡겨지게 된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 회의적인 시각은 롤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정치문화와 한국의 정치문화상의 간극을 통해

제기된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생활세계를 방어하는 형태의 구도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체계가 생산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활성화하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권용혁, 1996). 강제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영역의 수립이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전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비는 큰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에 입각할 때, 한국의 현실에서 시민사회에 기반한 공론영역의 역할은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시민社会의 활성화의 측면보다는 공적 정치 영역의 민주화가 보다 더 시급한 현실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자율적 공론영역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적영역을 민주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 참고문헌

- 강정인 (1998).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권용혁 (1996). 하버마스와 한국.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이론』 (271-292쪽). 서울: 문예출판사.
- 김동수 (1995). 민주주의론의 재조명: 민주주의와 상이성. 『한국정치학회 보』, 29권 2호, 125-144.
- 김비환 (1999). 현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 45집, 101-121.
- 김만권 (2001).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 김유경 (2001). 숙의 민주주의와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 『언론과 사회』, 10권 1호, 74-113.
- 김호기 (1995).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유필무 · 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121-150쪽). 서울: 한울.
- 박선희 (2000). 컴퓨터 매개 정치의 패러독스. 『한국언론학보』, 44권 2호, 61-101.
- 박정순 (2001).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이근식 · 황경식 (편), 『자

- 유주의란 무엇인가』 (107-148쪽).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조국 (2002).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 윤평중 (1998). 탈현대의 정치철학: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성찰. 『한국정치학회보』, 56집, 305~332.
- 이진우 (1993).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서울: 문예출판사.
- 이진우 (1996). 급진민주주의 규범적 토대: 법치국가에 관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적 해석.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177-208쪽). 서울: 문예출판사.
- 임혁백 (1997). 지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치민주화의 과정과 문제점.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21-60쪽). 서울: 나남출판.
- 정태욱(2002). 『정치와 법치』. 서울: 책세상.

- Arendt, H. (1970). *On Violence*. 김정한 역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 Bohman, J. (2000). The division of labor in democratic discourse: Media, experts an deliberative democracy. In S. Chambers & A. Costain (Eds.), *Deliberation, democracy and the media* (pp. 47-64).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ohen, J. (1993). Freedom of express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2(23), 207-263
- Dryzek, J.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New York: Oxford Univ. Press Inc.
- Beck, U. (1993).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문순홍 역 (1998). 『정치의 재발견』 서울: 거름.
- Bohman, J., & Rehg, W.(1997). Introduction. In J. Bohman & W. Rehg (Eds.).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pp. ix-xxx). Cambridge: The MIT Press.
- Dahl, R.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조기제 역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 Elster, J. (1998). Introduction. In J. Elster(Eds.), *Deliberative Democracy* (pp. 1-18).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abermas, J.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 (2001). 『공

- 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박영도 역 (2000).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Habermas, J. (1996). *Die Einbeziehung des andern: studien zur politischen Theorie*, 황태연 역 (2000). 『이질성의 포용: 정치이론연구』. 서울: 나남.
- Held, D. (1987). *Models of democracy*. 이정식 역 (1988).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 Kean,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Mouffe, C. (1999).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Social Research*, 66, 745-758.
- Rawls, J. (1971).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1985).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 Rawls (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 외 역 (2000). 『만민법』. 서울: 이끌리오.
- Walzer, M. (1999). 토론정치와 그 한계. 김용환 외 역 (1999).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Walzer (1998). *Spheres of justice*. 정원섭 외 역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최초투고 2002. 9. 2, 최종논문 제출 2002. 10. 10)

The Conditions of Communication for Autonomous Political Participation

Concentrating on the theories of J. Rawls and J. Habermas.

Sungku Hong

Lecturer

Dept. of Communication, Kangwon University

Deliberative democracy places its great importance on the theory that the citizens should fill the role of conduc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society. This is divided into two main theoretical trends in modern political theories, a liberal theory advocated by J. Rawls and a critical one emphasized by J. Habermas.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wo scholars focuses on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 citizens should be the reflective persons who can accept the terms of just communication going beyond the preference of individual belief. It is not denied that the discuss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guided by both Rawls and Habermas do not place emphasis upon mass media. Even though they seldom regard the argument how the current media can be a essential factor in encourag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y never close the eyes to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Rawls stresses the political freedom of speech as the very condition which leads to the citizens' autonomous participation in politics, while Habermas places his hope on the role of mass media that would amplify the citizens' will gushed out in public sphere.

Keywords: deliberative democracy, Rawls, Habermas, public sphere